

27.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9-49호 1999. 1. 29

개 정 이 유

주택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이 1999년 1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시행절차를 폐지하고 주택건설공사의 착공을 1년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주 요 골 자

- 가. 주택정책심의회 위원이 장관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조정됨에 따라 위원을 차관급으로 조정하고자 함.
- 나. 주택관련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정업자 지정, 사전결정, 전매제한제도 등의 시행절차를 폐지함.
- 다. 종전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3개월만 착공연기가 허용되었으나 주택경기의 침체등 착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완화함.
- 라. 주택을 건설하던 사업주체가 부도 발생시에는 시공보증자가 잔여공사를 완료하면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중에서 선택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.

주택회보